

第55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 12月 18日(月) 10時 05分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1. '94會計年度 決算 承認(案)
2. '94會計年度 豐備費 支出 承認(案)
3. '96會計年度 豐算(案)
4. 鍾路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附議된 案件

- | | |
|-----------------------------------------------|----|
| 1. '94會計年度 決算 承認(案)(鍾路區廳長 提出) | 1面 |
| 2. '94會計年度 豐備費 支出 承認(案)(鍾路區廳長 提出) | 1面 |
| 3. '96會計年度 豐算(案)(鍾路區廳長 提出) | 1面 |
| 4. 鍾路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安哲柱議員 外 8人 發議) | 9面 |

(10時 05分 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會計年度 決算 承認(案)(鍾路區廳長 提出)
2. '94會計年度 豐備費 支出 承認(案)
(鍾路區廳長 提出)
3. '96會計年度 豐算(案)(鍾路區廳長 提出)

(10時 07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千相旭 委員長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千相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千相旭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장 2주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투자설사위원회 그리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정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94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을 여러 동료 의원들 앞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액 923억 457만원 중 975억 6,800만원이 수납되어 당초예산액보다 52억 6,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 954억 5,000만원 중 729억 35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25억 4,7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그중 사고이월액 47억 7,500만원과 보조금 1억 2,200만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97억 6,8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위원회로 선임된 丁昌熙議員

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두 분이 장시간에 걸쳐 밀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미흡했던 사항들은 이미 집행기관에 우리 구의회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보아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비비 배정액은 총 7억 9,600만원 중 7억 4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526만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으로 3억 5,2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회동청사 신축공사 중 고도제한과 암반구조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2억 6,2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심사되어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시민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 규모는 세출 규모가 증가되고 재정자립도 역시 더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재정 구조의 개선이 요구되는 예산 구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예산심사 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비 지출예산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그 재원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실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시민행정위원회 분야에서 약 13억원을 삭감하여 도시건설의 투자사업에 중점 배정하는 등 세출 구조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총 1,182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988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193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4.5% 증가하고 최종

예산액보다 7.7%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이 780억 5,900만원과 의존수입 208억 2,2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 비율이 21.1%로 '95년도보다 0.5%가 증가하여 아직도 우리 구 재정은 상당부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을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 국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특히 투자사업에 편성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실사하고자 투자사업 실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투자사업 실사특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별 감액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종로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확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업 경영기법 및 세외수입 자원의 발굴 등 효율적 관리를 요구하면서 수정없이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과다계상한 과목 105건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총 25억 904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액 전액을 주민숙원사업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700만원으로 의료보호자 의료비 10억 1,000만원과 기타경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억 6,600만원으로 읍자금 회수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액 저소득주민 지원용자금으로 지원될 예산으로 가감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80억 6,100만원으로 과태료 수입, 견인료 수입, 임대 수입, 도로점용료 수입, 전년도 이월액, 기타 수입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세출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주차장운영 반환금 및 주차장건설 연구개발비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삭감하고 주차장건설 적립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과목별 조정내역은 유인

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参照)

199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안)
심사보고서

1995. 12.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제3차 위원회(1995.12.15~12.16)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1994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결산 총괄

- 세입예산액 923억457만원에 수납액 975억6,844만8,000원
- 세출예산액 954억5,081만4,000원에 지출액 729억351만원
- 차인잔액은 246억6,493만8,000원은 잉여금으로 246억6,493만8,000원을 1995년도에 이월, 이월액 중 사고이월 47억7,505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230만9,000원이 포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6,757만4,000원

○ 회계별 구분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846억7,119만8,000원에 수납액은 890억9,963만6,000원, 세출예산액 878억1,744만2,000원에 지출액 710억3,637만2,000원

• 차인잔액 180억6,326만4,000원은 잉여금 총액 180억6,326만4,000원으로 1995년도에 이월,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47억7,505만4,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2,080만3,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6,740만6,000원임.

○ 특별회계

- 예산 현액 76억3,33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억6,881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액 76억3,337만2,000원에 지출액은 18억6,713만8,000원으로 잉여금 총액 66억167만3,000원을 회계별로 각각 이월
-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150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6억167만3,000원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0억6,591만9,000원에 수납은 9억8,011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0억6,591만9,000원에 지출액은 9억7,860만9,000원으로, 차인액 150만6,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

-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억5,846만7,000원에 수납은 1억6,411만1,000원, 세출예산액 1억5,846만7,000원에 지출은 1억4,300만원으로, 차인액 211억1,152만4,000원은 1995년도에 이월

- 주차장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64억898만6,000원에 수납은 73억2,458만4,000원, 세출예산액 64억878만6,000원에 지출 7억4,552만8,000원, 차인액 65억7,905만5,000원으로 잉여금 65억7,905만5,000원 1995년도로 이월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나재암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김성태)

문) '94회계년도 결산액 중 세입과 세출 차액이 25억은?

답)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討論 要旨 : (토론자 : 나재암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5. 修正案의 要旨 : 없음

6. 審查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參照)

199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승인(건)
審查報告書

1995. 12.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제3차 위원회(1995.12.15~12.16)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 주요골자

○ '94년도 예비비 총액은 7억9,600만원

• 집행액 : 7억418만4,000원

• 잔액 : 5,526만원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예비비 지출 내역 ('94년도)

(단위 : 천원)

| 예산액 | 배정액 | 지출액 | | | 잔액 |
|---------|---------|---------|---------|---------|--------|
| | | 소계 | 지출액 | 사고이월액 | |
| 796,000 | 759,444 | 704,183 | 442,183 | 262,000 | 55,260 |

[지출내역]

계 : 7억418만3,370원

- 이화동 보궐선거 3,426만7,600원
- 기초통계 조사비용 2,535만8,600원
- 소송배당금 3,000만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3억5,255만7,170원
- 사고이월액(가회동청사 신축) 2억6,200만원

○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정보비, 관공비 등은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예비비의 승인, 불승인이 예산의 편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의회의 통계적 기능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제도로서
- 예비비로 지출이 금지된 정보비, 관공비의 지출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음

5. 討論 要旨 : (토론자 : 나재암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修正案의 要旨 : 없음

7. 審查結果 :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參照)

199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審查報告書

1995. 12.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제3차 위원회(1995.12.15)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1996년도 구정 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예산편성 기본방향
 -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비,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를 중점 반영
 - 연례적인 행사비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
 -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과거 집행실적으로 실소요액만 산출
 - 경상적경비는 점증식 예산편성을 지양

하고 영기준 방법으로 편성

- 예산규모
- 총 1,182억2,400만원
 - 일반회계 988억8,100만원
 - 특별회계 193억4,300만원
 - 일반회계
 - 총 988억 8,100만원
 -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 현황

| | |
|-------|--------------------|
| 일반행정비 | 538억7,800만원(54.5%) |
| 사회복지비 | 329억5,100만원(33.3%) |
| 지역개발비 | 104억2,300만원(10.3%) |
| 기타 경비 | 16억2,900만원(1.7%) |
 - 특별회계
 - 총 193억4,300만원
 -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 현황

| | |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10억1,600만원 |
|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2억6,600만원 |
| 주차장특별회계 | 180억6,100만원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윤주채, 장소수)

■ 총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96 예산액 | '95 예산액(당초) | 증 감 |
|---------|---------|-------------|-----------------|
| 합 계 | 118,224 | 103,242 | 14,983(14.5% 증) |
| 일 반 회 계 | 98,881 | 91,102 | 7,780(8.5% 증) |
| 특 별 회 계 | 19,343 | 12,140 | 7,203(59.3% 증) |

가. 회계별

①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년 도 별 | 세 입 | | | 세 출 | | |
|----------------|------------------|-------------------|-------------------|------------------|-------------------|-------------------|
| | 계 | 자체수입 | 의존수입 | 계 | 경상비 | 투자사업비 |
| '96년도 (구성비) | 98,881 (100%) | 78,059 (78.9%) | 20,822 (21.1%) | 98,881 (100%) | 76,284 (77.1%) | 22,597 (22.9%) |
| '95년도 (구성비) | 91,101 (100%) | 72,306 (79.4%) | 18,795 (20.6%) | 91,101 (100%) | 69,521 (76.3%) | 21,580 (23.7%) |
| 증 감 | 7,780 | 5,753 | 2,027 | 7,780 | 6,763 | 1,017 |

(다음 「페이지」에 계속)

②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세 입 | | 세 출 |
|---------|---------|---------|--------|
| | '96 예산액 | '95 예산액 | |
| 합 계 | 19,343 | 12,140 | 19,343 |
| 의료보험기금 | 1,016 | 674 | 1,016 |
| 새마을소득지원 | 266 | 165 | 266 |
| 주 차 장 | 18,061 | 11,301 | 18,061 |

③ 구유재산(토지)

(단위 : m²)

| 구 분 | 행정재산(m ²) | 잡 종 재 산 | 계 | 비 고 |
|-------|-----------------------|---------|-----------|-----|
| '95년도 | 1,254,748 | 50,027 | 1,304,775 | |
| '94년도 | 1,255,139 | 50,120 | 1,305,259 | |
| 증 감 | -391 | -93 | -484 | |

④ 위원회별

(단위 : 천원)

| 계 | | 운영위원회 | | 시민행정위원회 | | 도시건설위원회 | |
|---------|---------|-------|-------|---------|--------|---------|--------|
| '96년도 | '95년도 | '96년도 | '95년도 | '96년도 | '95년도 | '96년도 | '95년도 |
| 118,224 | 103,242 | 1,167 | 1,220 | 102,487 | 81,659 | 14,570 | 20,363 |

4. 견토의견

[일반회계]

○ 총괄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단체의 재정 운용도 기업 경영기법에 접근하여 주어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출 효율을 극대화하여 재정자립도를 개선함으로써 적자재정을 모면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세입부문은 지방세수입은 법적으로 세원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세외수입 자원의 발굴과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적자를 보이고 있는 쓰레기처리비용의 개선을 위하여 수의자부담 원칙에 의거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세출부문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는 정확한 인력 진단에 의한 기구 개편과 인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입

○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11.6%가 인상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5.1%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된 바 그 감소요인이

○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면적이 영업용 4,652m², 주거용이 21,974m²가 작년보다 각각 감소하였고(31쪽)

○ 하천사용료도 영업용 7,264m², 주거용이 240m²의 과세면적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감소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편성에 있어서도 '95년도에 임대하였던 동충동 129-86외 7필지를 제외한 사유에 대한 검토와

○ 구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4억으로 계상된 바 이를 예치기법의 개선으로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세출

○ 세출예산은 경상비 점유비율이 77.1%로서 작년의 76.3%보다 0.8%(67억원)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재원의 감소가 초래된 바 그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동청사 신축 및 어린이집 건립 등이 그 주요원인으로 파악되며

○ 예산편성에 있어 산출기초상 단가 적용 잘못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보육시설 공사비 설계비(565쪽)

- 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용(477쪽)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자산취득비 예산에 있어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한 검토(307쪽 공기청정기, 363쪽 공기청정기)
 - 동청사 및 어린이집 건립 예산에서 평당 건축비 산정이 설계, 감리비를 제외하고도 평당 280만원 선으로 책정한 바 평당 단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상황판 제작 예산으로 8개과에 총 5,600여 만원을 편성한 바 기존 상황판을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165, 233, 247, 281, 283, 297, 325, 679쪽)
 - 임차료 예산을 7개 과에 책정하였는 바 임차단가가 각각 상이하여 이를 각각 집행하고 있는 바 이를 포괄예산으로 하여 기존 차량의 이용을 도모하게 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단가계약에 우위를 점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251, 285, 427, 445, 547, 601쪽)
 -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임차료 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한 바 현재 종로구에 농산물 직판장 2개소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타당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601쪽)
 - 보상금으로 지역주민별·생활환경 활성화 추진과 동업무 활성화 추진으로 각각 4, 500만원씩 편성되었는 바 보상사업과 보상방법 및 예산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331쪽 하단)
 - 주요투자사업 중 중기재정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중기재정계획수립시 본사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검토
 - 도로 3건, 하수도 4건, 전기 1건, 공원녹지 5건
 - 연구용역비를 기획예산과 1억, 교통지도과 1억, 도시정비과 5억7천 등을 각각 계상하였는 바 이를 포괄예산으로 하여 종합적인 검토 하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169, 780, 584쪽)
 -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예산은 매년 같

은 금액의 보수비가 투입되는 바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특별회계]

- 세 입
 - 주차장 특별회계 '95예산액이 113억 원인 바 이 기금의 은행 예금상품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상품인지 이자수입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세 출
 - 주차장 건설 부지매입비(783쪽)의 집행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의 과년도 전체 읍자 규모 및 회수실적 등 자금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정창희위원, 이병문위원, 현수한위원, 심재득위원, 이형술위원, 선상선위원, 홍기서위원, 나재암위원
- 답변자 :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문화공보실장, 시민봉사실장, 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
- 문) 작년에 비해 투자사업이 50% 삭감된 이유는?
답)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봉급 인상분 및 기타 경상적 경비로 많이 소요되어 그렇습니다.
- 문)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편성된 이유는?
답)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문) 이자수입이 4억으로 편성되었는데 계산근거는?
답) 수요계획과 연관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과소계산된 것입니다.
- 문)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 목적은?
답) 팔당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재배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 문) 낙산 가정복지관 증축에 필요한 장비 6,000만원의 편성근거는?
답) 각종 첨단시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문) 구민걷기대회 참석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답) 400명에서 500명 정도입니다.

- 문) 구민 전전생활육성 지원금의 사용처는?
답) 포괄적 성격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 문) 주차장 특별회계 106억의 이자수입이 3 억1,800만원 산정 이유는?
답) '96년 1/4분기 68억원 부지매입 예정이 있어 산정된 것입니다.
- 문) 종묘 앞 광장 화장실 정비계획은?
답) 내부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 문) 도로관리(보수공사) 3,000만원 삭감에 대한 견해는?
답) 포괄예산으로 예산이 많으면 주민에게 깨끗한 시설물을 제공하겠습니다.
- 문) 보건소 키폰 설치비 산정근거는?
답) 44회로 주장치를 설치하고자 산출한 금액입니다.
- 문) 작년 우천으로 몇 그루 나무가 쓰러졌습니까?
답) 관내 380주가 쓰러졌습니다.
- 문) 관내 공원 매점 사용료에 대한 추진실적은?
답)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자 공개입찰을 12월 19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문) 도로점용료 축소이유는?
답) 금년 컴퓨터로 물량 확인한 바 세입부분에 잡은 면적이 있어 중복 조정된 것입니다.
- 문) 구유재산 관리수수료 산정 근거는?
답) 우리 구 관내 수량 6개 중 구 청운노인정이 있으며 6개부분 수리비입니다.
- 문) 종로3·4가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산정근거는?
답) 지가가 비싸 책정 예산이 많습니다.

5. 討論 要旨

- 일반회계 : 홍기서위원의 동의안
 - 세입부문 : 원안 가결
 - 세출부문 : 삭감, 수정 가결
- ※ 삭감액 전액을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등에 증액
- 주차장 특별회계 : 선상선위원의 동의안
 - 세입부문 : 원안 가결
 - 세출부문 : 수정
- ※ 삭감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증액

6. 修正案의 要旨

- 일반회계 세출
 - 기획예산 일반업무추진비 666만원 등 총

16억5,192만2,000원 삭감

※ 수정(안) : 별첨

○ 특별회계 세출

- 주차관리 반환금 1억원 등 총 1억원 삭감

※ 수정(안) : 별첨

7. 審査結果

- 일반회계 :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원안 가결
-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 원안 가결
- 주차장 특별회계 -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1996年度 豫算(案) 修正(案)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일반회계 | | 예 산 과 목 | | | 사 업 명 | | 당초예산액 | | 정 안 | | 수정예산액 | | 쪽 | 비 고 |
|------------|------------|---------|-------|--------------|---------------------|---------------------|------------|------------|-----------|------------|--------|--------|---------------------|-----|
| 실 과 | 관 험 | 세 험 | 세 세 험 | 목 | | | 감 액 | 증 액 | 감 액 | 증 액 | | (註) | | |
| ♣ 운영위원회 소개 | 합 | • 계 | | | | | 13,390,994 | -2,509,042 | 2,509,042 | 13,390,994 | | | (단위 : 천원) | |
| 의회사무국 | 입법 및 지원기관계 | 의회운영 | 의사운영 | 경상예산 | 일반 | (01) 일반수용비 | 59,000 | 0 | 115,968 | 174,968 | | | ● 중액부분및신설 | |
| | | | | ● 흥보활동비 | | 12,000 | | | 18,000 | 30,000 | 30,000 | 149 | | |
| | | | | ● 속기사보조일용인부임 | | 0 | | | 3,068 | 3,068 | | | • 19,180원×4명×40일 | |
| | | | | ● 의회관련각종자료구입 | | 1,000 | | | 1,000 | 2,000 | 2,000 | 149 | | |
| | | | | 자산 | (02) 물품및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취득비 | ● 자료설치설치 | 0 | | | 2,500 | 2,500 | 2,500 | 151 | | |
| | | | | 운송비 | (02) 시체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부수전비 | ● 개원4주년행사 및 의회운영활동비 | 27,000 | | | 18,000 | 45,000 | 45,000 | 141 | | |
| | | | | 여비 | (02)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직원해외출장여비(3→4명) | 7,500 | | | 2,500 | 10,000 | 10,000 | 151 | | |
| | | | | 사업예산 | 시설비 | (04) 시설비 | | | | | | | | |
| | | | | 등 |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회로설치 | 0 | | | 6,000 | 6,000 | 6,000 | | | |
| | | | | 의정활동 | 경상예산 | 의회비 | (03) 여비 | | | | | | | |
| | | | | | | ● 의회초청경비 | 10,000 | | | 10,000 | 20,000 | 20,000 | 157 | |
| | | | | | | (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의장단활동경비 | 0 | | | 50,400 | 50,400 | | | |
| | | | | | | • 의장 18,000,000원 | | | | | | | • 1,500,000원×12월 | |
| | | | | | | • 부의장 10,800,000원 | | | | | | | • 900,000원×12월 | |
| | | | | | | • 상임위원장 21,600,000원 | | | | | | | • 600,000원×3명×12월 | |
| | | | | 일반 | (01) 일반수용비 | | | | 4,500 | 6,000 | 6,000 | 157 | • 1,500,000원×3,000회 | |
| | | | | 운영비 | ● 관립인기념품 | 1,500 | | | | | | | | |

(단위 : 천 원)

| 실 과 | 예 산 과 목 | 사 업 명 | 당초예산액 | 수 정 안 | |
|----------------------|-------------------------------------------------------------------------------------------------------------------------------------------------------------------------------------------------------------------------------------------------------------------------------------------------------------------------------------------------------------------------------------------------------------------------------------------------------------------------------------------------------------|------------------------------------------------------------------------------------------------------------------------------------------------------------------------|----------------------------------------------------------------------------------------------------------------------------------------------------------------------------|----------------------------------------------------------------------------------------------------------------------------------------------------------|--------------------------|
| | 관 한 창 세 세 창 목 | | 감 액 | 증 액 | |
| ♣ 시민행정위원회 소개 | | | | | |
| 기획예산과 일반행정 기획관리 경상예산 | 임부 부전비 특수 활동비 일반 운영비 보상금 통계전산 운영 문화공보실 일반행정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기획관리 기획예산 임부 부전비 (02)시체추진업무추진비 ○지방행정별전추진 ●유관기관업무추진 ○지방자치법강화추진 (01)일반수용비 ○'95달라시는 우리구성 ○구민생활안내리후행 ○상황판(주요업무) (02)포상금 ○지역행정발전추진포상금 (01)일반수용비 ○사업체기초통계인체물 특수 활동비 ○구정홍보활동추진 ○지역문화행사 홍보추진 (01)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통반장일간지 •통반장지역신문 (02)민간경상보조 ●종로문화원 운영비지원 임부 부전비 (03)기타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관서당 경 총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 7,051,679 6,660 11,340 15,750 8,000 10,000 14,000 2,200 11,266 15,120 12,600 180,720 19,200 0 0 17,280 5,760 10,080 | -1,651,922 -4,660 -3,750 -4,000 -5,000 -6,600 -2,200 -5,000 -3,120 -4,600 -54,000 -19,200 12,240 12,240 -2,880 -960 -1,680 | 5,900,530 2,000 36,340 12,000 4,000 5,000 7,400 0 6,266 12,000 8,000 126,720 0 12,240 14,400 4,800 8,400 | 수정액 산하 부 고 |
| 감사실 행정감사 | 감사관리 경상예산 | | | | |
| 일반행정 | 임부 부전비 관서당 경 총 | (02)기타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 17,280 5,760 10,080 | -2,880 -960 -1,680 | 14,400 4,800 8,400 |

(단위 : 천 원)

(단위 : 천 원)

(단위 : 천 원)

| 실 | 과 | 관 | 예 | 산 | 과 | 목 | 사 | 업 | 명 | 당초예산액 | 수 | 정 | 안 | 수정예산액 | 쪽 | 비 | 고 | | |
|----|----|------|----|---|------|------|----|-----|----|-------|--------------------------|----------|---|---------------------|------------------------------|----------------|------------------|------------|------------|
| 제 | 무 | 과 | 일 | 반 | 제 | 무 | 형 | 세 | 형 | 세 | 세 | 형 | 자 | 산 | (01)자산취득비 | | | | |
| 제 | 무 | 과 | 일 | 반 | 제 | 무 | 형 | 세 | 형 | 세 | 세 | 형 | 자 | 산 | ○(01)자산취득비 ○녹화기 ○이동전화기 | 2,400 7,500 | -2,400 -3,250 | 0 4,250 | 365 367 |
| 제 | 산 | 관 | 리 | 경 | 상 | 예 | 산 | 보 | 상 | 금 | (01)보상금 | ○결산검사와원 | | | | | | | |
| | | | | | | | | •식대 | | | 1,838 | -735 | | 1,103 | 381 | | | | |
| | | | | | | | | •여비 | | | 1,138 | -455 | | 683 | 381 | | | | |
| | | | | | | | | | 일 | 반 | (03)운영수당 | | | | | | | | |
| | | | | | | | | | 운 | 영 | ○결산검사와원수당 | | | | | | | | |
| | | | | | | | | | 등 | | (04)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구유체산판리수선비 | | | | | | | | |
| | | | | | | | | | | | 55,000 | -25,000 | | 30,000 | 381 | | | | |
| 보 | 건 | 및 | 보 | 건 | 및 | 보 | 건 | 및 | 운 | 영 | (01)일반수용비 | | | | | | | | |
| 건 | 및 | 생활환경 | 설 | 및 | 생활환경 | 설 | 및 | 운 | 영 | 비 | ○주차타워유지보수비 | | | | | | | | |
| 설 | 및 | 설 | 개 | 및 | 설 | 개 | 및 | 운 | 영 | 비 | ○보일러세관 및 유지 | | | | | | | | |
| | | | | | | | | | | | 10,440 | -1,740 | | 8,700 | 415 | | | | |
| | | | | | | | | | | | 3,000 | -3,000 | | 0 | 415 | | | | |
| | | | | | | | | | | | (02)물품및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Key-Phone설치비 | | | | | | | | |
| | | | | | | | | | | | 23,999 | -3,999 | | 20,000 | 423 | | | | |
| 청 | 소 | 과 | 보 | 건 | 및 | 환경 | 관 | 리 | 경 | 상 | (01)일반수용비 | | | | | | | | |
| 소 | 과 | 과 | 보 | 건 | 및 | 환경 | 관 | 리 | 경 | 상 | ○환경미희원휴게실설치 | | | | | | | | |
| 과 | 과 | 과 | 보 | 건 | 및 | 생활환경 | 설 | 개 | 및 | 운 | (01)일반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01)일반수용비 ○이동식화장실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2,640 | -2,640 | | 0 | 463 | | | | |
| | | | | | | | | | | | ○환경미희원휴게실설치 | | | | | | | | |
| | | | | | | | | | | | 60,000 | -30,000 | | 30,000 | 477 | | | | |
| | | | | | | | | | | | ○(02)자치단체대행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수도권매립지건설사업비부담 | | | | | | | | |
| | | | | | | | | | | | 2,500,000 | -500,000 | | 2,000,000 | 479 | | | | |
| 사회 | 복지 | 과 | 사회 | 보 | 장 | 일 | 사회 | 복지 | 경 | 상 | 예 | 산 | 보 | 상 | (01)보상금 | | | | |
| 복지 | 과 | 과 | 사회 | 보 | 장 | 일 | 사회 | 복지 | 경 | 상 | 예 | 산 | ● | 혼자사는 노인 아쿠르트공급 | | | | | |
| 기정 | 복지 | 과 | 사회 | 보 | 장 | 기정 | 복지 | 기정 | 복지 | 경 | 상 | 예 | 산 | (02)사회복지사업부모축진비 | | | | | |
| 기정 | 복지 | 과 | 사회 | 보 | 장 | 기정 | 복지 | 기정 | 복지 | 경 | 상 | 예 | 산 | ○구민양뜰장전행및개장운영(8~6회) | | | | | |
| | | | | | | | | | | | | | | 720 | -120 | | | | |
| | | | | | | | | | | | | | | 1,008 | -168 | | | | |
| | | | | | | | | | | | | | | 600 | 541 | | | | |
| | | | | | | | | | | | | | | 840 | 543 | | | | |

(단위 : 천 원)

| 실 과 | 예 산 과 목 | 사 업 | 영 | 당초예산액 | 감 액 | 증 액 | 수정예산액 | 쪽 비 | 고 고 |
|-----------------------|--------------------------------------|------------------|-----------------------------------------------------------------------------------------------|---------|----------|--------|---------|--------|--------|
| 체 관 | 관 항 세 창 세 세 창 목 | 시 설 비 등 | (04) 시설비 ○ 낙산가정복지관증축 ○ 청운독서실보수공사 ○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 460,000 | -230,000 | | 230,000 | 541 | |
| 청 소 년 복 지 | 사업예산 등 | 민간자 본이전 | (02) 민간대행사업비 ○ 독서실 및 수련실 창비구입 ● 독서실 짐기장비구입 | 20,000 | -20,000 | | 0 | 559 | |
| 유 아 복 지 | 사업예산 등 | 민간자 본이전 | (02) 시설계비 ○ 보육시설보수공사설계 ○ 평창어린이집신축 (04) 시설비 ○ 평창어린이집신축 (05) 시설부대비 ○ 평창어린이집신축 | 2,304 | -2,304 | | 0 | 559 | |
| 민 방 위 관 | 민방위관리 | 민간자 본이전 | (06) 임차료 ○ 민방위교육장 임차 (08) 시설장비유지비 ○ 대피시설유도표지판 | 21,000 | -21,000 | | 0 | 681 | |
| 보 상 금 | | 보상금 | (01) 보상금 ● 민방위설치 소양교육 강사료 ● 민방위설치 실습교육 강사료 | 8,400 | | 44,880 | 53,280 | 681 | |
| | | | | 4,200 | | 29,330 | 33,530 | 683 | |

(단위 : 천 원)

| 실 성 과 | | 예 산 과 목 | | | 사 업 명 | | | 당초예산액 | | 수 정 안 | | 수정예산액 | | 축 비 고 | | |
|-----------------------|-----------------------------------------------------|------------------------------------------------|------------------------------------------------|------------------------------------------------|--------------------------------------------------|------------------------------------------------------------------------------------------------------------------------------------------------------------|----------------------------------------------------------------------------------------------------|------------------------------------------------------------------------------------------------------------|----------|-------------|----------------------------------------------------------------|-------|--|-------------|--|--|
| 부 분 | 항 목 | 세 부 항 | 세 부 항 | 세 부 항 | 자 산 | (02) 물품및도서구입비 ●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 | 0 | 21,000 | 21,000 | 685 | | | | | | |
| 산 업 과 부 분 | 지 적 경 제 기 발 생 활 경 기 개 | 지 역 경 제 기 발 활 경 기 개 | 지 역 경 제 기 발 활 경 기 개 | 지 역 경 제 기 발 활 경 기 개 | 자 산 | (06) 임차료 ○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설치 | 125,000 | -125,000 | | | 0 | 601 | | | | |
| ♣ 도시건설위원회 소계 | | | | | | | | 6,280,315 | -857,120 | 1,832,544 | 7,315,739 | | | | | |
| 하 수 과 부 분 | 보 건 및 환경 관 개 | 환경 관 리 | 상 하 수 리 | 경 상 예 산 | 일 운 영 비 | (10) 세료비 ○ 허수시설물보수자재구입 | 20,000 | -5,000 | | | 15,000 | 485 | | | | |
| 공 원 과 부 분 | 보 건 및 환경 관 개 | 공원 녹지 관 리 | 도시 공원 리 | 사업 예 산 | 사업 비 등 | (04) 시설비 ○ 관내허수도시설물보수공사 ○ 관내허수도준설 ○ 신영동 234주변 하수도정비공사 ○ 세동 52주변 | 200,000 300,000 130,000 70,000 | -30,000 -40,000 -10,000 -6,000 | | | 170,000 260,000 120,000 64,000 | 487 | | | | |
| 공 원 과 부 분 | 보 건 및 환경 관 개 | 공원 녹지 관 리 | 도시 공원 리 | 사업 예 산 | 사업 비 등 | (04) 시설비 ○ 당고개어린이공원정비 ○ 청신어린이공원현대화 ● 숭인근린공원정비 ○ 근린공원시설물정비 ○ 어린이공원정비 ○ 낙산근린공원정비 ○ 낙산근린공원화장실설치 ○ 공원간판정비 ● 의통근린공원정비 ○ 인왕산자연공원정비 | 85,000 90,000 150,000 95,000 90,000 50,000 100,000 48,000 50,000 50,000 | -50,000 -30,000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0 -30,000 -10,000 -10,000 | | | 35,000 60,000 250,000 75,000 70,000 40,000 0 | 503 | | | | |
| 공 원 과 부 분 | 보 건 및 환경 관 개 | 공원 녹지 관 리 | 경 상 예 산 | 일 운 영 비 | (10) 세료비 ○ 농지대관리유지 ○ 관내녹지대관리 ● 학단 및 꽃식재 | 15,381 | -5,000 | | | 10,381 | 511 | | | | | |
| | | | | | | 67,200 | -20,000 | | | 47,200 | | | | | | |

(단위 : 천 원)

(단위 : 천 원)

(다음 「폐이지」에 계속)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다음 「폐이지」에 계속)

○議長 金憲中 千相旭 委員長!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鍾路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安哲柱議員 외 8人 發議)

(10時 23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4항 鍾路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安哲柱議員 외 8인으로부터 区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이 발의되었습니다. 安哲柱議員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議員 安哲柱議員입니다.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청의 전진한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오신 金憲中 議長님과 洪承台 副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종로구청의 '95년도 주요업무 청취사항 및 '96년도 구정 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유는 종로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지역주민의 필요한 요구를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参照)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
번호

408

발의년월일 : 1995. 11.

발의자 : 안철주 의원 외 8인

1. 주 문

-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1995년도 종로구정의 추진사항과 1996년도의 시책방향 등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함

3. 관련근거 등

-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議長 金憲中 安哲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安哲柱議員이 제안설명한 案件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5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時 37分 散會)

○出席議員 20人

金憲中

安哲柱

李炳文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沈載得

李萬魯

鄭泰淳

李炳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洪起瑞

康來奎

金以煥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副區廳長 權哲

總務局長 吳炳漢

財務局長 金誠泰

市民局長 金賢植

都市整備局長 趙學來

建設局長 吳鍾錫

保健所長 李星世